

우)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, 8F[www.kma.org]/ 전화(02)6350-****/ 전송(02)790-8911
보험정책국 국장 김기성 [6574] 보험연구팀 팀장 김선우 [6576] 팀원 박수연 [6560]/E-mail: sypark.kma@gmail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2-8605호

시행일자 2019. 10. 25.

수 신 각 시도 의사회장, 각 과 학회장, 각 과 의사회장

참 조

제 목 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 안내

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32호(2019.10.24.) “신의료기술의 안전성 유효성 평가결과 고시 일부개정” 관련입니다.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의료법」 제53조 및 「신의료기술평가에 관한 규칙」 제4조에 의한 「신의료기술의 안전성·유효성 평가결과 고시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-202호, 2019.09.19.)를 붙임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합니다.

- 다 음 -

- 가. 개정이유 :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 최종심의 결과, 안전성·유효성이 있는 의료기술로 인정된 신의료기술에 대하여 그 평가결과, 사용목적, 사용대상 및 시술(검사)방법 등을 고시하고자 함
- 나. 주요내용 :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에서 안전성 및 유효성이 있는 신의료기술로 평가된 ‘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’ 등 4건의 신의료기술을 [별표1]에 추가

[별지추가]

- (신의료기술) 768. 경혈 자극을 통한 감정자유기법
- (신의료기술) 769. 망막혈관촬영술
- (신의료기술) 770. 초음파유도하 진공보조장치를 이용한 유방 양성병변 절제술
- (신의료기술) 771. 유도분만을 위한 자궁용 이중풍선 카테터 삽입술

붙임 : 1. 개정 고시문 1부.
2. 고시 전문 1부. 끝.

대한의사협회장

“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”

